

## 중국의 2021년중재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

### A Study of Recent Trend and Revision Draft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이양\*

Yang Li

김용길\*\*

Kim, Yongkil

#### 〈 목 차 〉

- I. 서론
  - II. 중국의 상사중재에 관한 최근 동향
  - III. 중국의 2021년중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IV. 중국의 2021년중재법 개정안의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국 중재법, UNCITRAL 모델법, 중재, 뉴욕협약, 임의중재

\* 中國西南政法大學 民商法學院 副教授, 法學博士(主著者), 本研究由重慶市博士后國際交流基金(2019) 支持.

\*\* 圓光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仲裁人, 法學博士(交信著者)

## I. 서 설

중국 공산당의 18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央委员会全体会议)에서는 “중재제도를 보완하여 중재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19기 당대회에서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체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 8월 24일에 열린 중국 중앙법치위원회(依法治国委员会)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习近平总书记)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균등하고 보편화된 현대적인 공공법률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업무개혁방안을 통하여 법률서비스가 더욱 편리해 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중국 국내 또는 외국이든 간에 중재제도가 상대적으로 고효율, 낮은 비용, 비공개, 유연성이 있는 민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사법적인 문제를 대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sup>1)</sup>

중국은 1994년 8월 31일에 중재법(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sup>2)</sup>을 공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다. 중국은 뉴욕협약(紐約公約)의 체결국이지만, 중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균형은 중재에 관한 전반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 중재법은 세계 각국의 중재법과는 달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중재의 통상적인 실행(practice)들이 중국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동시에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관들이 중재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 중재법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는 2021년 7월 30일에 중국 사법부(Administrative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People's Government)가 “중재법개정건의수렴고(仲裁法修订征求意见稿)”를 발표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운용 동향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자유무역지대, 중국 민법전과 중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번에 발표된 “중재법개정건의수렴고”의 주요 내용

1) 张卫平, “仲裁裁决撤销程序的法理分析”, 《比较法研究》2018年第6期.

2)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是为保证公正、及时地仲裁经济纠纷, 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 保障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 制定的法律. 于1994年8月31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九次会议通过, 自1995年9月1日起施行. 根据2017年9月1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九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法官法〉等八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중국 상사중재에 관한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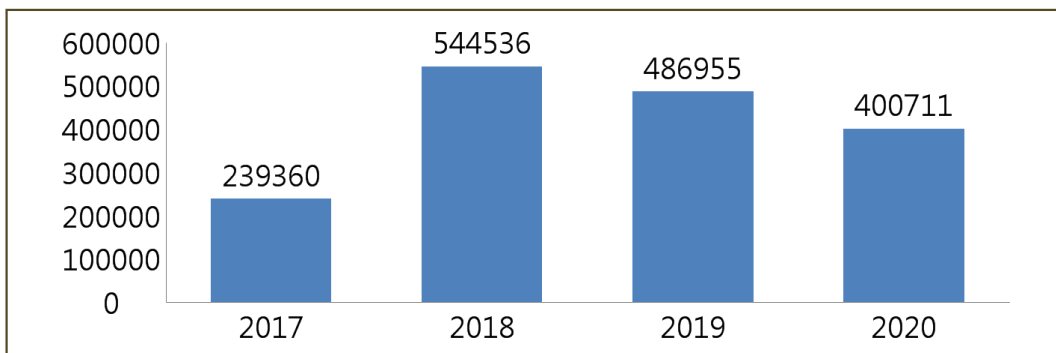
### 1. 중국상사중재제도의 발전 개황

중국 공산당 중앙사무국(中共中央办公厅)과 중국 국무원은 2018년 12월 31일에 “중재제도의 보완과 중재공신력의 제고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完善仲裁制度提高仲裁公信力的若干意见)”<sup>3)</sup>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중재제도를 성실하게 발전시키고, 중재법의 실시를 통하여 중재산업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중국 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수리 내용, 국제상사중재의 사건 수, 중재법과 섭외 중재에 관한 실행 및 사례분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국 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수리 내용

최근 2년간 COVID19 여파로 인하여 중국의 중재사건은 예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되었다. 2020년에 전국 259개 중재위원회의<sup>4)</sup>가 접수한 400,711건의 사건 중 상사중재 사건은 261,047건인데, 그 중에서 47개 중재위원회가 인터넷 중재를 통해 139,664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중국의 2020년 전체 중재사건의 총액은 7,187억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411억 위안이 줄어든 것이다. (그림1, 그림2참조).<sup>5)</sup>

〈그림 1〉 전국 중재위원회의 사건 수리 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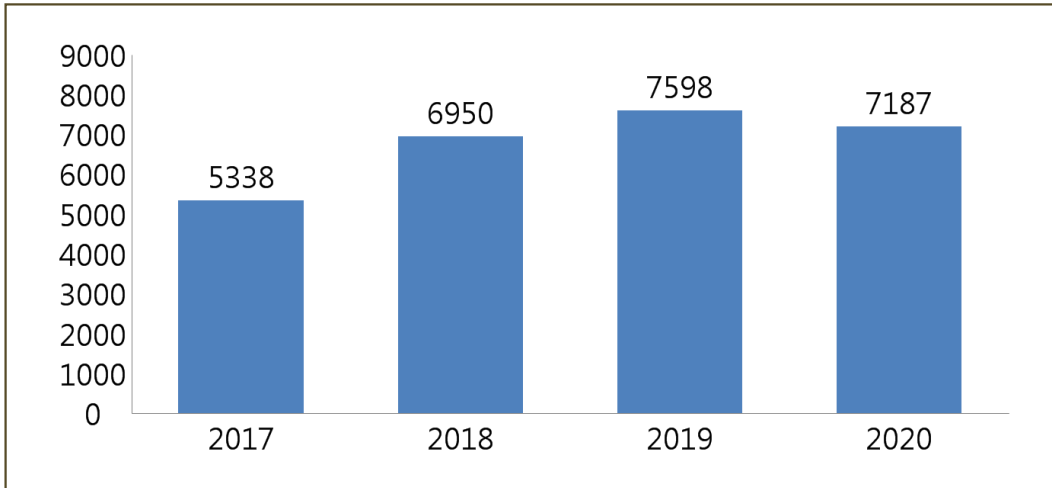


3) 《关于完善仲裁制度提高仲裁公信力的若干意见》，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在2018年12月31日提出了。

4) 이 논문에서 나오는 “중재위원회”는 중국에서 민상사중재를 하는 중재기관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기관”과 “중재위원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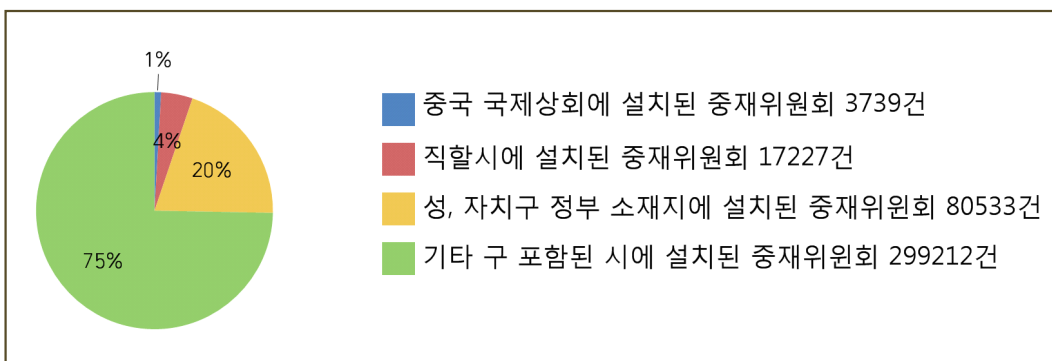
5) 中国国籍经济贸易仲裁委员会，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20-2021)，法律出版社，2021，第 2页。

〈그림 2〉 전국 중재위원회의 사건 수리 총액(억 위안)



2020년에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OIC)에 설치된 중재위원회 즉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국 해사중재위원회와 양안 해협 중재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은 3,739건(1%)이고, 직할시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17,227건(4%)이다. 성 및 자치구 정부소재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80,533건(20%)이며, 기타 구를 포함한 시(市)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299,212건(75%)이다(그림3).<sup>6)</sup>

〈그림 3〉 2020년 전국 접수권 사건 수량 및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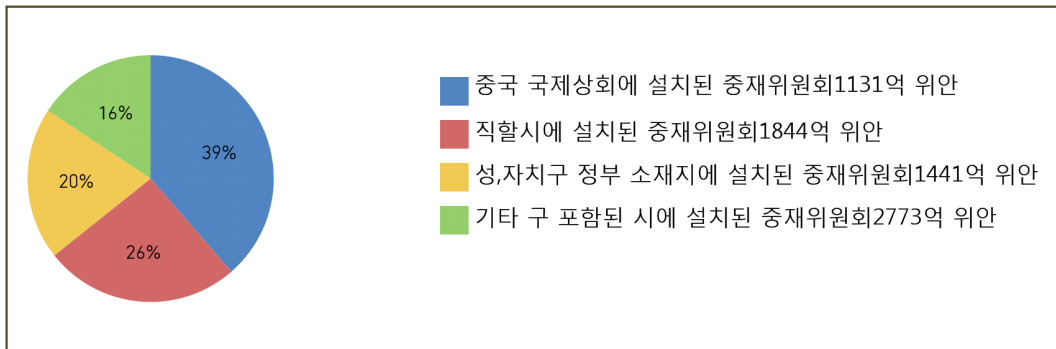


아울러 중국 국제상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건 금액은 1,131억위안 (16%)이고, 직할시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건 금액은 1,844억위안(26%)이며,

6)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 (2020-2021) , 第4页.

성 및 자치구 소재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건 금액은 1,441억위안(20%)이며, 기타 구를 포함한 시(市)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건 금액은 2,773억위안(38%)이다(그림4).<sup>7)</sup>

〈그림 4〉 2020년 전국 접수된 사건 수량 및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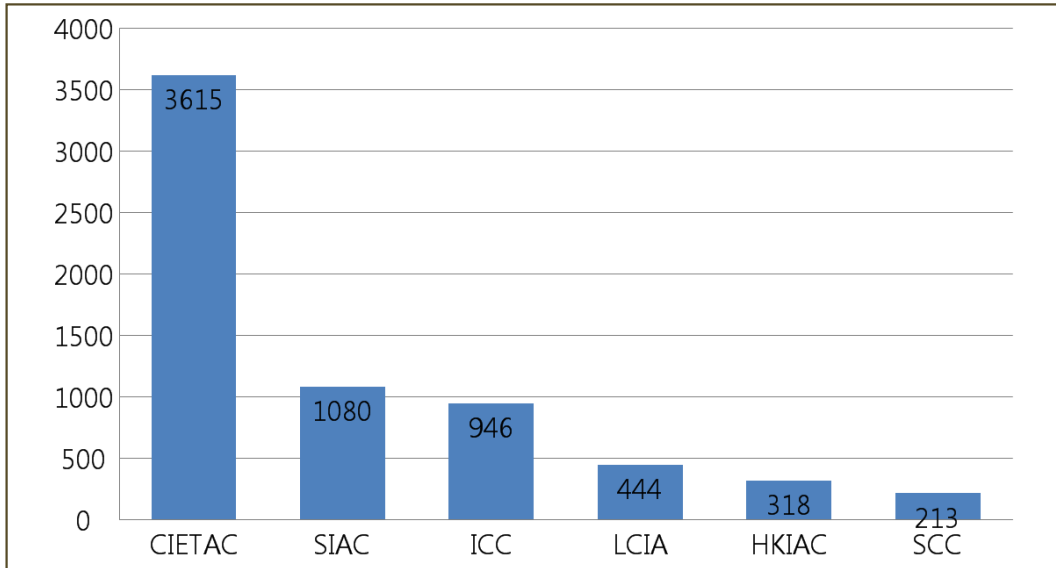
## (2) 중국 및 외국 중재기관의 국제중재의 사건 수

중국의 국제상사중재는 주로 기관중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2020년에 76개 국가 및 지역에 걸쳐 총 3,165건을 접수하였다. 이 때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중영 쌍어로 약정하는 사건은 102건 이었는데, 당사자들이 국제협약과 해외 법률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났다. 아래 [그림5]는 CIETAC과 외국 중재기관이 2020년에 접수된 사건 수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대상 중재기관은 ICC국제중재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C), 런던 국제중재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스톡홀름 상사중재원(The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KIAC) 등이다<sup>8)</sup>. 이를 살펴보면 CIETAC은 3,165건으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으며, SIAC 1080건, ICC 946건, LCIA 444건, HKIAC 318건, SCC 213건 순으로 중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7)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 (2020-2021), 第5页.

8)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 (2020-2021), 第8~9页.

〈그림 5〉 2020년 세계의 대형 중재기관의 사건 수량



### (3) 중재법과 섭외 중재에 관한 실행 및 사례분석

중국은 섭외 중재 사건에 대한 사법(司法)상 적용이 비교적 늦게 시작 되었다. 따라서 상사중재에 관한 업무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지위와 관련하여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이는 비록 중국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지만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비중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하에서는 개혁·개방시기인 1978년부터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근거하여 섭외중재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례에서는 중재 가능성, 중재 조항의 독립성과 중재의 제3자에 대한 관할 등 기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사례에서는 중재의 적용에 관한 시범적 효과를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면서 섭외 중재에 대하여 뉴욕협약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섭외 중재는 주로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섭외중재 분야에서도 중국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표1).

9) 朱科, 《中国国籍商事仲裁司法审查制度完善研究》, 法律出版社, 2018年, 第2页.

〈표 1〉 최고인민법원공보상 40년간 중국 섭외중재의 재판에 관한 사례별 추세<sup>10)</sup>

구분	사례	재판의 추세
1988년	중국의 기술 수출입 회사(中国技术进出口公司)가 스위스의 공업 자원회사 (瑞士工业资源公司)를 상대로 하는 권리 침해배상과 관련한 상소 사건	중재 조항을 부정하여,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은 중재로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함.
1998년	중국의 강소성 물자그룹 경공업방직회사 (江苏省物资集团轻工纺织总公司)가 홍콩의 유역 그룹 유한공사 (香港 裕亿 集团有限公司), 캐나다의 태자발전유한 회사(太子发展有限公司) 간의 권리침해에 관한 배상분쟁관련 상소사건.	권리침해 분쟁에 관한 중재적격성을 명확히 하고, 중재 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1999년	홍콩미쓰비시상사유한회사(香港三菱商事会社有限公司)가 삼협투자유한회사(三峡 投资有限公司) 및 호북삼련기계화학 공업공정유한회사(湖北三联机械化工工程有限公司)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	최고사법기관 차원에서 당사자의 의사 자치를 우선으로 하고 중재지법을 보충으로 하는 중재합의 준거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였음.
2003년	독일 쉬플린국제공정 유한책임회사 (德国旭普林国际工程有限责任公司)가 중국 무석 위커통용공정고무유한회사 (中国无锡沃可通用工程橡胶有限公司)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 <sup>11)</sup>	최고인민법원은 회답에서 당사자가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중재지의 법률, 즉 중국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2006년 무석중급법원 (无锡中院)은 본 사건이 내국중재 재결사건이 아니므로 뉴욕협약을 적용한다고 재정하였음. 따라서 이 중재 조항은 이미 중국에 의해 무효로 되었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1에 부합되므로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음.
2008년	중국항기위업그룹유한회사(中国恒基伟业集团有限公司), 북경북경대청도 유한책임회사 (北京北大青鸟有限责任公司)와 광성투자 발전유한회사(广晟投资发展有限公司), 홍콩청도과학 기술발전우선회사 (香港 青鸟科技发展优先公司)간의 대출보증 계약 관련한 분쟁 사건	양당사자가 계약분쟁해결의 준거법만 약정하였을뿐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은 중재 조항의 독립성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 조항이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10) 刘晓红, 冯硕, “改革开放40年来中国涉外仲裁法律制度发展的历程、理念与方向”, 《国际法研究》, 2019年第6期.

11) (2003) 无锡立民终字第074号民事裁定书.

구분	사례	재판의 추세
2008년	독일 고속철도회사(德高铁公司)가 ICC국제중재법원에 제14006/MS/JB/JEM호 중재 재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사건 <sup>12)</sup>	법원은 뉴욕협약 제1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이 판결을 비국내성 판결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집행을 하였음.
2014년	북경조래신생체육레저유한회사(北京朝来新生体育休闲有限公司)가 외국중재 재결사건을 승인하고 집행해줄 것을 신청한 사건 <sup>13)</sup> 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제12113-0011호, 제12112-0012호 중재재결사건 승인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신.	계약서에 따라 대한 상사 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했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법률은 당사자에게 선택적 요소가 없는 분쟁을 역외 중재기관에 의뢰하거나 해외에서 임의중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약정은 무효한 협의에 속한다. 뉴욕협약 제5조 제1 항 (a)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한다”고 회신하였음.
2016년	지멘스국제무역상해유한회사(西门子国际贸易(上海)有限公司)와 피신청자인 상해 황금부동산유한회사(上海黄金置地有限公司)는 외국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신청한 사건	비록 당사자 쌍방이 모두 중국법인이지만, 이 사건은 자유무역구와 관련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외자 독자회사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구 법치건설의 선행시범을 지지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본 사건의 중재합의는 ‘선택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 부합한다’ 분
2016년	상해제1 중급법원은 내보자원 국제개인유한회사(来宝资源国际私人有限公司)(싱가포르)와 피신청인 상해신태국제무역유한회사(上海信泰国际贸易有限公司)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내린 2015년 005호 중재재결서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 사건.	중재합의로 3인 중재를 명확히 약정한 전제하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단독중재방식으로 실시한 신속절차는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침식하였으므로 뉴욕협약 (d) 항에 따라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여야 함

#### (4) 소결

국제상사중재는 하나 또는 여러 분쟁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은 국제상사무역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에게 널리 인정되고있다<sup>14)</sup>. 중국에서도 중국적인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서 상사중재는 사법(司法)기능을 대체할 뿐만아

12) (2008) 甬仲监字第4号民事裁定书

13) 《最高人民法院于北京朝来新生体育休闲有限公司申请承认大韩商事仲裁院作出的第12113-0011号、第12112-0012号仲裁裁决案件请示的复函》，(2013)民四他字第64号.

14) 李光国, 《国际商事仲裁》,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20년, 第109页.



나라 사법과 동등한 기관력과 강제집행력을 갖고있다.<sup>15)</sup> 최근 40년동안의 섭외중재를 살펴보면 중국의 섭외상사중재가 날로 국제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중재법이 2009년과 2017년에 두차례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 “중재법개정건의수렴고”는 중국이 중재분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COVID19 감염병 상황에서의 중재의 발전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중국의 일부 대외경제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국제상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상사중재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재들에 관한 초점은 전통적인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적(act of god)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다. 즉 법률체계마다 불가항력에 대한 법정조건이 달리 존재하게 되므로, 불가항력조항에 대한 국제상사계약의 약정도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COVID19감염병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불가항력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법률문제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중국 민법전 제180조는<sup>17)</sup>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민사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사업위원회 장철위(臧铁伟)주임은 현재 중국에서 COVID19감염병 발생이라는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상응한 전염병예방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예견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에 직면하게 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법리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면제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해당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일방은 거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COVID19등 불가항력적인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그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COVID19로 인하여 정부의 강제적인 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COVID19가 불가항력이라 하여도 계약위반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sup>19)</sup>

15) 傅郁林, “中国仲裁员职业群体的发展和自我定位”, 《北京仲裁》, 第73辑.

16)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20-2021), 第22页.

17) 第一百八十条 因不可抗力不能履行民事义务的, 不承担民事责任.法律另有规定的, 依照其规定.不可抗力是不能预见、不能避免且不能克服的客观情况.

18) 《公众关心的疫情防控相关法律问题, 法工委权威解答来了》, 载全国人民代表大会网,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2/23100ec6c65145eda26ad6dc288ff9c9.shtml>最后访问日期2021年11月9日.

19) 龚柏华, “国际商事合同不可抗力条款对“新冠肺炎”疫情适用法律分析”, 《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 2020年第2期.

### 3. 자유무역구와 중재법

중국의 “중재제도의 보완과 중재공신력의 제고에 관한 약간 의견”<sup>20)</sup>에 따르면 중재서비스에 관한 전면적인 개방과 발전전략을 제대로 관철하고,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국 중앙의 분쟁해결기관이 국제기구의 요구나 지역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과 제도들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국가의 중대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자유무역구의 건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상해 등 18개 자유무역시범구를 비준하였다.<sup>21)</sup>

상해자유무역구 내의 금융, 항공, 해상, 전자상거래분야 등의 상사분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기관중재는 행정적인 색채가 짙고 중재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들이 법제화, 국제화, 편리성 등을 갖춘 경영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법제화된 비소송분쟁에 관한 해결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2)</sup>

2017년 3월 18일 제5차 주해중재위원회(珠海仲裁委员会) 제2차 회의에서는 “횡금자유무역시범구 임의중재규칙(横琴自由贸易试验区临时仲裁规则)”이 통과되어 같은 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횡금자유무역구에서는 임의중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횡금자유무역구의 중재규칙은 모두 8장 61조로 되어있는데, 동 규칙 제2조는“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된 기업 상호간의 약정에 따라 임의중재규칙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그 중재판정부의 명의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 4. 중국민법전과 중재법

중국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전에는 중재와 관련된 18개 조문이 있으며 4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중재를 특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둘째는 중재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셋째는 중재기관이 특정한 분쟁에 대하여 판정권한을 가지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넷째는 선행 중재에서 일반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sup>23)</sup>이번에 제정된 중국 민법전에 규정된 중재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 [표2]와 같다.

20) 关于完善仲裁制度提高仲裁公信力的若干意见.

21) 18个自由贸易试验区分别为上海、广东、天津、福建、辽宁、浙江、河南、湖北、重庆、四川、陕西、海南、山东、江苏、广西、河北、云南、黑龙江.

22) 张超汉, 丁同民, “我国建立自由贸易试验区历史仲裁制度的意义及路径”中州学刊, 2017年8月第8期.

23)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20-2021)第19页.

〈표 2〉 중재에 관한 중국 민법전의 규정

종류	내용	민법 조항
제1종	특정분쟁을 중재로 해결	제233조, <sup>24)</sup> 제944조, 제229조
제2종	중재의 시효	제195조, <sup>25)</sup> 제198조, 제594조, 제694조
제3종	중재기관의 특정분쟁에 대한 판정권한	제147조, <sup>26)</sup> 제148조, 제150조, 제151조, 제533조, 제565조, 제580조, 제585조
제4종	선행중재에 관하여 일반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의 부담	제687조, <sup>27)</sup> 제693조

### Ⅲ. 중국 중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국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는 총 8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을 [표3]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재기관의 설립시에 등기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개정안 제12조), 중재인명부 보완 및 중재인의 부적격 요건의 보완(제18조), 주계약과 종된 계약의 효력문제를 보완(제24조), 중재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제27조), 중재합의의 존재 및 효력과 관할권 이의관련 보완(제28조), 중재합의의 효력 요건의 보완(제35조), 보전 조치의 보완(제43조 및 제46조), 긴급중재인제도의 신설(제49조), 중재인의 선임방식을 보완(제51조), 중재판정의 취소 요건의 보완(제77조), 중국 경외 중재사건에 관한 집행절차(제87조), 중재할 수 있는 섭외사건의 영역 확대(제88조), 섭외사건에 대한 중재절차의 보완(제91조), 섭외사건에 대한 중재절차의 보완(제93조) 등이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3) 이외에도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에는 중국 중재법의 상당부분을 수정 내지 보완하고 있다.

24)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第二百三十三条 物权受到侵害的,权利人可以通过和解、调解、仲裁、诉讼等途径解决.

25)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第一百九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诉讼时效中断,从中断、有关程序终结时起,诉讼时效期间重新计算:(一)权利人向义务人提出履行请求;(二)义务人同意履行义务;(三)权利人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四)与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具有同等效力的其他情形.

26)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第一百四十七条 基于重大误解实施的民事法律行为,行为人有权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构予以撤销.

27)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第六百八十七条 当事人在保证合同中约定,债务人不能履行债务时,由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为一般保证.一般保证的保证人在主合同纠纷未经审判或者仲裁,并就债务人财产依法强制执行仍不能履行债务前,有权拒绝向债权人承担保证责任,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一)债务人下落不明,且无财产可供执行;(二)人民法院已经受理债务人破产案件;(三)债权人有证据证明债务人的财产不足以履行全部债务或者丧失履行债务能力;(四)保证人书面表示放弃前款规定的权利.

〈표 3〉 중국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의 주요 개정조문 내용

조문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2조	1.중재기관의 설립시 등기등록제도 마련	관련 내용이 없음	1. 중재기관 설립 시 등기를 하여야 함(제12조) 1) 성, 자치구, 직할시는 사법행정부서 2) 중국국제상회는 국무원 사법행정부서 2. 외국중재기관은 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부서에서 등기 후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등록(備案)
제18조	1.중재인명부 보완 2.중재인의 부적격 요건 보완	1.중재위원회에서 분야별 중재인명부 작성(제13조) 2. 중재인의 부적격 요건에 관한 내용 없음	1.중재기관에서 분야별 중재인“추천”명부 작성(제18조) 2. 중재인이 될 수 없는 자(제18조) 1)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제한적인 민사행위능력자, 2)형사처벌을 받은 자 3)법률에 의거하여 중재인이 될 수 없는 자
제24조	주계약과 종계약의 효력문제를 보완	관련 내용이 없음	1.주계약과 종계약의 중재합의의 약정이 상이하면 주계약을 기준으로 함(제24조) 2. 종계약에 중재합의의 약정이 없으면 주계약의 중재합의가 종계약에도 효력이 있음(제24조)
제27조	중재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	관련 내용이 없음	1.당자사간 중재합의로 중재지의 약정이 가능함. 2. 중재지의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사건관할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보고 그곳의 중재관정으로 봄(제27조)
제28조	중재합의의 존재 및 효과와 관할권 이의관련 보완	1.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시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결정의 청구가능(제20조) 2. 중재합의 효력에 이의시 중재판정부 최초 개정전에 제기가능 (제20조)	1.중재합의의 존재여부, 효력문제, 중재사건의 관할권에 이의시 중재규칙의“답변기한”내 제기 후 중재판정부가 결정함(제28조) 2.중재판정부의 구성전에도 중재기관은 표면의 증거로 중재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 가능함(제28조) 3. 이러한 절차없이 직접 인민법원에 이의제기 시 수리하지 않음(제28조) 4.중재합의의 효력이나 관할권결정에 이의시 결정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중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심사청구 가능 (제28조) 5. 중재합의의 무효나 중재사건에 관할권이 없다는 재정을 불복하는 경우 재정수령일로부터 10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사 청구 가능(제28조)

조문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35조	중재합의의 효력 요건 보완	1. 중재합의시 중재사 항, 중재기관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 보충합의가 가능하며, 보충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중재 합의는 무효임(제18조)	1. 중재합의시 중재기관에 대한 약정이 불 명확하지만, 약정된 중재규칙으로 확정이 가능하면 당해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수리함. 2. 중재규칙상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보 충합의가 가능하며 보충합의를 못할시 최 초로 입안한 중재기관에서 수리함(제35 조) 3. 중재기관을 정하지 못하거나 보충합의 도 못할시 당사자의 공동주소지의 중재기 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동주소 지가 없을시 최초 입안한 중재기관에서 수리함 (제35조)
제43조	보전 조치의 보완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와 증거보전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제28조, 제 46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임 시조치,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 시조치에는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및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 기 조치가 포함됨 (제43조)
제46조	보전 조치의 보완	섭외중재사건의 당사 자가 증거보전 신청 시 섭외중재위원회는 그 신청을 증거소재지 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 (제68조)	1. 당사자가 중재신청 전에 보전조치시, 법률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제기 가능 함. 2. 당사자가 중재신청 후 보전조치 시 직 접 피보전재산 소재지, 증거소재지, 행위 이행지, 피신청인소재지 또는 중재지의 인민법원과 중재판정부에 제기 가능(제46 조)
제49조	긴급중재인 규정 추가	관련 내용이 없음	임시조치를 경외에서 집행할 경우 당사자 는 직접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을 지정하여 임 시조치시에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기관 에 긴급중재인의 지정신청이 가능(제49 조)
제51조	중재인의 선임방 식 보완	1. 3인 중재판정부를 약정한 경우 각자 1인 의 중재인을 선정하거 나 또는 각각 중재위 원회 주임에게 1인의 중재인을 정하도록 함. 2. 의장중재인은 당사 자 공동으로 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정 함 (제31조)	1. 당사자들이 3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약정시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 하며,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기관에서 정함(제51조) 2.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 하며, 공동선정을 못할 경우 기 지정된 두명의 중재인이 공동 선정함(제51조) 3. 두명의 중재인이 공동선정을 못할 경 우 중재기관이 정함(제51조)

조문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77조	중재판정의 취소 요건 보완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중재합의가 없을시 2)중재판정대상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권리가 없을시 3)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률 위반된 경우 4)중재증거의 위조 5) 상대방이 공평한 판정에 영향을 줄만한 증거를 은닉시 6)중재인의 뇌물수수행위(제58조)	제58조의 (4), (5)를 삭제하고 다음 사항들을 추가함. 1)중재합의가 무효일 경우 2) 중재판정의 내용이 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날 경우 3) 피신청인이 중재절차를 통지받지 못하였거나 의견진술을 못하였을 경우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5) 악의적으로 공모하거나 증거 위조 등 사기의 수단으로 중재판정을 취득한 경우 등 (제77조)
제87조	경외 중재사건에 관한 집행절차	관련 내용이 없음	1. 중국 경외의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직접 피집행인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집행을 신청(제87조) 2.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경내에 없지만 인민법원의 심리사건과 관련있을시 해당 인민법원에 신청 가능(제87조) 3.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경내에 없지만 경내 중재사건과 관련있을시 중재기관소재지 또는 중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가능 (제87조)
제88조	중재할 수 있는 섭외사건의 영역 확대	섭외 경제무역, 운송, 해사관련 분쟁은 본 장을 적용함(제65조)	1. 섭외 요소가 있는 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함(제88조)
제91조	섭외사건에 대한 중재절차 보완	관련 내용이 없음	1. 섭외요소가 있는 상사분쟁은 중재기관을 당사자간에 정하거나, 직접 전문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하도록 정할 수 있음 (제91조) 2. 중재지가 미정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사안에 따라 중재지를 정할 수 있음(제91조)
제93조	섭외사건에 대한 중재절차 보완	관련 내용이 없음	전문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에 중재인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이견이 있는 중재인은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관련 의견을 당사자에 전달해야 함(제93조)

## IV. 중국 중재법 개정안의 시사점

중재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사적자치로부터 국가 사법권의 전면적인 통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사법권(司法權)과 사회의 사법(私法)부문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적인 중재기관의 성격은 중국 중재법의 발전 방안이나 중재 기관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중국에서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은 그 성격이나 위치, 인력문제, 재정상황 및 업무영역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행정적인 색채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sup>29)</sup> 중국이 향후에 국제상사중재의 중심적인 지위를 구축하려면 국제화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겸비한 중재관련 법률제도를 한층 더 급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이하에서는 중국 “중재법개정건의수렴고”를 통한 중국 중재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재기관의 성격을 확정.

“중재제도의 보완과 중재공신력의 제고에 관한 약간 의견”은<sup>31)</sup> 중재위원회의 내부관리 구조를 개혁하고 보완하도록 제시하였다. 중국 중재위원회는 중재법에 근거하여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의 해결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중국의 각지에서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운영구조와 관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조건이 성숙되고 개혁에 적극적인 중재위원회가 우선 시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재법이 실시되면서 중국 중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비교적 크게 제고되었지만 중재기관의 행정화는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제정 당시에 중국의 입법환경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지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는 점도 있었다는 것이다.<sup>32)</sup>

그러나 결국 중재기관의 법률적인 속성, 중재기관의 운용 및 관리, 중재제도의 최적화, 중재기관의 법적 성격 등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중재기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상실하거나 중재법의 입법정신을 위배하게 됨으로써 격렬한 국제중재시장의 경쟁에서 완

28) 刘晓红, 冯硕, “对《仲裁法》修订的三点思考-以《仲裁法》(修订) (征求意见稿) 为参照”, 《上海政法学院学报》2021年第5期.

29) 陈福勇, “我国仲裁机构现状实证分析”, 《法学研究》, 2009年第2期.

30) 金秋, 金容吉, “中国国际商事仲裁的历史沿革、现状及发展趋势”韩国《仲裁研究》, 2017年12月, 第27卷第4号.

31) 《关于完善仲裁制度提高仲裁公信力的若干意见》

32) 蔡元培, “仲裁机构去行政化的两种模式”, 《北京仲裁》, (第91辑).

전히 배제되는 등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3)</sup> 중재기관들이 중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 제13 조에서는 중재기관을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업무(公益性服務)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중재업무를 다루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사업단위의 개혁과 중재의 공신력 향상이라는 큰 배경하에서 중재기관의 지위를 비영리법인으로 규범화하게 되면 공급 부족의 곤경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법인 체계와 결부하여 중재기관을 사회서비스 기구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4)</sup>

## 2. 중재합의의 보완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는 중재의사표시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합의의 효력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중재지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재합의로 중재기관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다.<sup>35)</sup>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종계약분쟁, 회사기업 대표 소송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도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sup>36)</sup> 즉 국제적인 중재규범에 접목시키고 중재에 대한 중국의 우호도 및 흡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 조에서는 중재지기준을 정하였으며, 당사자는 중재합의로 중재지를 약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하고 있다. 중재지를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중재지와 다른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지와 관련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상사중재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례에 따라 제28조는 중재합의의 효력 및 그 관할권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주적 심사권을 명확히 하였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관할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의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하는데, 인민법원의 심사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姜丽丽, “论我国仲裁机构法律属性及其改革方向” 《比较法研究》2019年第3期.

34) 谭启平, “论我国仲裁机构的法律地位及其改革之路” 《东方法学》2021年第5期.

35) 《仲裁法》征求意见稿 第21条、第35条.

36) 《仲裁法》征求意见稿 第24条、第25条.



### 3. 중재절차의 보완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는 중재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분쟁해결을 제고하며, 중재에 대한 사법적인 지지를 구현하고, 중재지로서의 중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재 보전내용과 임시조치를 집중적으로 통합하고, 행위보전제도와 긴급중재인제도를 채택하였다. 제49조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전에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을 선임하고 임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기관에 긴급중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아울러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 제30조는 중재를 인터넷방식(网络方式)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정보수단의 송달에 관하여 제34조는 중재서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수단 등 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중재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제69조는 중재와 조정을 결합하는 중국적인 특색제도를 혁신, 발전시키며, 중재확인조항을 두어서 당사자가 중재재판정부외의 조정인(调解员)을 선택하여 단독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아울러 기존의 중재절차와도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임의중재제도의 신설

사건을 상설중재기관에서 관리하는가에 따라 중재는 기관중재와 비기관중재로 나뉜다. 비기관중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이다. 임의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전개를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밀접한 조화가 요청된다.<sup>37)</sup> 임의중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로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각국 법률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관련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외 임시중재의 효력을 승인을 해 왔지만 본래 중국 중재법에서는 임의중재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즉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는 주체의 권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임의중재제도가 유연성, 다양성, 자주성,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자유무역항에서의 분쟁해결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1월 발표된 ‘자유무역시범구의 건설을 위해 사법적인 보장을 제공할 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sup>39)</sup>은 임의중재를 단독조항으로 승인하는 형식으로

37) 傅攀峰, “司法如何协助临时仲裁? -法国“助仲法官”制度及其启示”, 《北京仲裁》第109辑.

38) 张超汉·丁同民, “我国建立自由贸易试验区临时仲裁制度的意义及路径”, 《中州学刊》2017年第8期.

39) 《最高人民法院关于为自由贸易试验区建设提供司法保障的意见》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의 임의중재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sup>40)</sup>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 제9조는 중재의 사법심사를 정하고 있는데 자유무역구내에 등록된 기업간의 임의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중국 법률이 경내에서 진행되는 임의중재에 대하여 첫 ‘완화(松绑)’로 볼 수 있다.<sup>41)</sup> 아울러 제9조 제3항에서는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된 기업 상호간 내지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의 중재규칙에 따라 특정 인원이 관련 분쟁을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중재합의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민법원은 당해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경우 직상급 법원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 그 심사의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 및 답변(答复)한 후에 재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4월에 횡금자유무역시범구(橫琴自由貿易試驗區)에서 ‘횡금자유무역시범구 임의중재규칙’을 시행한 것은 임의중재가 중국 경내에서 정식으로 규범화되었음을 상징하며, 중국의 중재역사상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진다. 2017년 9월, 중국 인터넷중재연맹은 “중국 인터넷중재연맹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접목규칙”<sup>42)</sup>을 확정하고 이와 연계된 ‘인터넷중재 클라우드 플랫폼 2.0’을 발표했다.<sup>43)</sup>

이번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는 중국의 국가상황과 결부하여 임의중재의 적용범위를涉外商事분쟁으로 한정하고, 임의중재의 구성, 회피 등 핵심절차를 정했다. 동 제93조는 전문중재판정부가 판정한 사건의 재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결에 이의가 있는 중재인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부동의 한 의견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부동의 한 의견은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기록과 재결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중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임의중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2021년 전후에 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전세계의 경제는 일시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각국은 이러한 감염병에서 벗어나고자,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

40) 何悦涵, “中国建设自由贸易港临时仲裁制度问题研究”《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2018年第6期.

41) 刘冰, “构建《海峡两岸仲裁中心仲裁规则》临时仲裁制度研究-以《横琴自由贸易试验区临时仲裁规则》为借鉴”《海峡法学》2018年3月第1期.

42) 《中古互联网仲裁联盟临时仲裁与机构仲裁对接规则》

43) 陈磊, “优化营商环境背景下中国临时仲裁的制度设计-以《仲裁法》的修改为中心”《广东社会科学》2020年第5期.

국에서도 국제상사중재는 물론 국내 상사중재도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 중재법은 세계 여러 국가의 중재법과 달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는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중국 경내의 중재절차 진행, 중재합의, 중재지, 임시조치, 중재판정부의 권한 등 다방면에서 국제중재의 일반원칙을 도입하고 있어서, 향후에 중재법이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에 중국은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더욱 조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략하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이 시행된 후 26년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개정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내에서 진행되는 중재사건이나 국제중재 사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재법개정건의수령고”가 통과될 때까지 그 수정 내용과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민법전에서 중재관련 규정이 18개 정도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谭后平, “论我国仲裁机构的法律地位及其改革之路”, 《东方法学》, 2021年第5期。
- 姜丽丽, “论我国仲裁机构第法律属性及其改革方向”, 《比较法研究》, 2019年第3期。
- 蔡元培, “仲裁机构“去行政化”的两种模式”, 《北京仲裁》, 第91辑。
- 张卫平, “仲裁裁决撤销程序的法理分析”, 《比较法研究》, 2018年第6期。
- 傅郁林, “中国仲裁员职业群体的发展和自我定位”, 《北京仲裁》, 第73辑。
- 刘冰, “构建《海峡两岸仲裁中心仲裁规则》临时仲裁制度研究-以《横琴自由贸易试验区临时仲裁规则》为借鉴”, 《海峡法学》, 2018年3月第1期。
- 张超汉, 丁同民, “我国建立自由贸易试验区临时仲裁制度第意义及路径”, 《中州学刊》, 2017年8月第8期。
- 刘晓红·冯硕, “改革开放40年来中国涉外仲裁法律制度发展的历程、理念与方向”, 《国际法研究》, 2019年第6期。
- 傅攀峰, “司法如何协助临时仲裁? -法国“助仲法官”制度及其启示”, 《北京仲裁》第109辑。
- 何悦涵, “中国建设自由贸易港临时仲裁制度问题研究”, 《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 2018年11月第25卷第6期。
- 金秋·金容吉, “中国国际商事仲裁的历史沿革、现状及发展趋势”, 《仲裁研究》, 2017年12月第27卷第4号。
- 龚柏华, “国际商事合同不可抗力条款对“新冠肺炎”疫情适用法律分析”, 《上海对外经贸大学学报》, 2020年第2期。
- 王利明, 《民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21年。
- 李光国, 《国际商事仲裁》,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20年。
- 朱科, 《中国国际商事仲裁司法审查制度完善研究》, 《法律出版社》, 2018年。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主编,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18-2019)”, 《法律出版社》2019年。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主编,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19-2020)”, 《法律出版社》2020年。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主编,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2020-2021)”, 《法律出版社》2021年。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主编,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法律出版社》, 2021年。

## ABSTRACT

### A Study of Recent Trend and Revision Draft of the Chinese Arbitration Law

Yang Li  
Kim, Yongkil

The Chinese Arbitration Law came into force in 1995 and has been implemented for 26 years. A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ere are many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issue of ad hoc arbitration, and this institutional disconnection can bring about problems such as misalignment of arbitration powers. On July 30, 2021, China's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a draft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draft has generated a lively debate among the public.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and inadequate points of the draft of Arbitration Law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in th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the COVID-19, the Free Trade Zo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Arbitration Law.

**Key Words** : The Chinese Arbitration Law, UNCITRAL Model Law 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Ad hoc Arbitration